

■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[별표 3] <개정 2026. 2. 19.>

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한시정원표(제4조 관련)

1. 제4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7년 2월 28일)	500
총계	500
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	500
교사	500
2. 제4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8년 2월 29일)	500
총계	500
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	500
교사	500
3. 제4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8년 2월 29일)	500
총계	500
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	500
교사	500
4. 제4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7년 2월 28일)	1,307
총계	1,307
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	624
교사	624
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	683
교사	683
5. 제4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8년 2월 29일)	1,307
총계	1,307
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	624

교사	624
중학교 ·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	683
교사	683
6. 제4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8년 2월 29일)	1,307
총계	1,307
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	624
교사	624
중학교 ·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	683
교사	683